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

판 결

사 건	2015가단69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
원 고	A
피 고	B
변 론 종 결	2016. 7. 6.
판 결 선 고	2016. 8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임야 654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㎡ 건물과 계단, 같은 감정도 표시 ㅂ, ㅅ, ㅇ, ㅈ, ㅊ, ㅋ, ㅌ,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㎡ 창고 및 같은 감정도 표시 ㅊ, ㅋ, ㅌ,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㎡ 화장실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: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과 창고 등을 축조하여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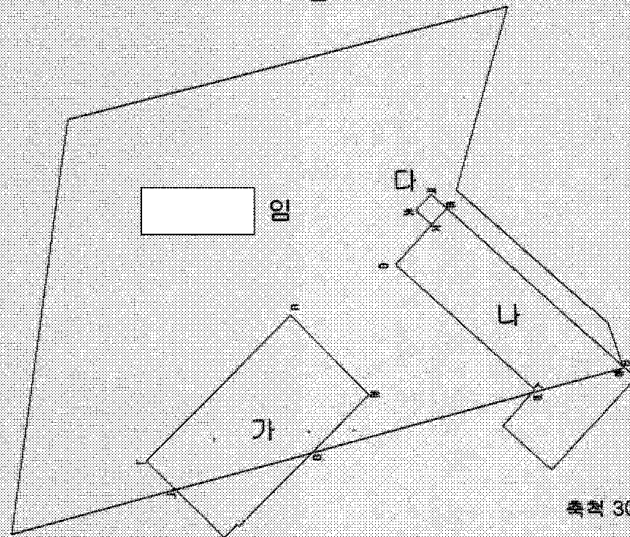
2. 근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평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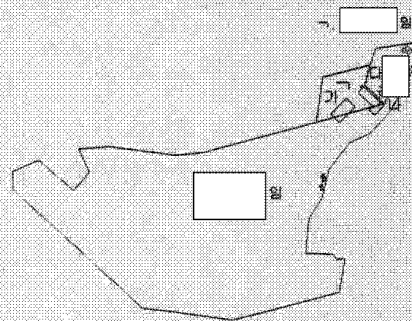
감 정 도 (2015 가단 696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)

영양군

참 고 도



축척 3000 분의 1



별 계	
지적선	
건물선	
아래빈칸	

지번 및 부호	면적(㎡)	비 고
가	62	가, 나, 다, 라, 마, 바
나	59	라, 마, 바, 사, 아, 자, 차, 카, 타
다	2	가, 나, 다, 라, 마, 바

감 정 일 : 2016 년 5 월 30 일

감 정 인 : 지적기사